

# 순천대학교 비교과 교육과정위원회 규정

제정 2014. 3. 27.

개정 2015. 3. 03.

개정 2018. 3. 30.

개정 2018. 9. 12.

개정 2019. 3. 25.

개정 2020. 2. 27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의 비교과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연구·심의하고, 관련 학생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순천대학교 비교과 교육과정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5.3.3.)

**제2조(기능)** 위원회는 비교과 교육과정을 연구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비교과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에 관한 사항
2. 비교과 교육과정 조정에 관한 사항
3. 비교과 교육과정 통합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
4. 비교과 교육과정 학생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(개정 2015.3.3.)

**제3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교무처장, 학생처장, 교육혁신본부장, 인재개발본부장, 창업지원단장, 도서관장, 박물관장, 국제교류교육원장, 학생상담센터장, 교수학습개발센터장 및 총장이 임명하는 교원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교육혁신본부장이 된다. (개정 2015. 3. 3., 2018. 3. 30., 2019. 3. 25., 2020. 2. 27.)

②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③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**제4조(회의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18. 9. 12.>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

**제5조(연구위원)** ① 위원회에 비교과 교육과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연구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 연구위원은 비교과 교육과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교내외의 인사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③ 연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6조(간사)**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**제7조(기타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5. 3. 5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8. 3. 30.) (순천대학교 학칙)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 개정)

①부터 ②까지 생략

③ 순천대학교 비교과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교양기초교육원장”을 “교양융합대학장”으로, “교양기초교육원 교양아카데미아센터장”을 “교양융합대학 의사소통센터장”으로 한다.

④부터 ⑩까지 생략

제3조(모집단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) <생략>

부칙<제917호, 2018.9.12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9. 3. 25.> (순천대학교 학칙)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의 별표 1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규정의 개정)

① 생략

② 순천대학교 비교과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구성) 본문 중 “인력개발원장”을“인재개발원장”으로 한다.

③부터 ⑤까지 생략

부 칙<2020. 2. 27.> (순천대학교 학칙)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폐지) 생략

제3조(다른 규정의 개정)

①~③ 생략

④ 순천대학교 비교과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구성) 본문 중 “교육과정지원센터장”을 삭제하고, 위원장은 “교육과정지원센터장”을 “교육혁신본부장”으로 한다.

⑤부터 ⑧까지 생략